

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| 제410호 |
| 의결 연월일 | 년 월 일 (제 회) |

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제출자 | 충청북도지사 |
| 제출연월일 | 2023년 10월 4일 |

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계획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410 |
|----------|-----|

제출연월일 : 2023년 10월 4일

제안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202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< 보건복지국 소관 >

(단위:백만원)

| 연번 | 출연기관 | 소관부서 | 출연내역 | 예정금액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|
| | 2개 기관 | | | 2,108 | |
| 1 |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| 복지정책과 | 서비스원 인건비 및 운영·사업비 | 1,936 | |
| 2 |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| 보건정책과 |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 지원 | 172 | |

1)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¹⁾ 출연금 : 1,936백만원

○ 출연목적

- 도민의 욕구 다양화 및 돌봄 필요대상 확대로 사회서비스의 공공 부문 역할 확대
-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민관 사회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道단위 컨트롤타워 구축·운영

○ 출연 내역 및 예정금액

| 출연내역 | 예정금액 | 재원 | 비고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|
| 합 계 | 1,936백만원 | 도비 100% | |
| 사회서비스원 인건비 | 1,016백만원 | | |
| 사회서비스원 운영·사업비 | 920백만원 | | |

1) 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특수법인

○ 기대효과

- 공공성·전문성 향상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및 이용자 신뢰도 제고
- 다양한 민간지원 기능을 통해 민간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
- 사회서비스의 공적기능 강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의 구심적 역할 수행

② **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²⁾ : 172백만원**

○ 출연목적

-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만성적인 간호수급문제 개선 및 간호사 타지역 유출방지
- 감염병대응, 공공의료사업 수행 등 질 좋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마련
- 안정적인 간호인력 공급을 통한 단양군보건의료원의 성공적 정착

○ 출연 예정금액 : 172백만원

○ 출연내역 : 지방의료원 등 공공간호사 육성 지원

○ 기대효과

-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로 원활한 감염병전담병원 역할수행,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제공, 재활병동 운영 등 보다 수준높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

3. 의안전문 : 불 임

4. 관계법령 발취 : 불 임

5. 기타

2) 「민법」 제32조 및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

1 출연 심의요구서

| | | | | | |
|------|-------|-------|-----|-------|------|
| 주관부서 | 복지정책과 | 소속부서장 | 팀 장 | 담당주무관 | 전화 |
| | 복지보훈팀 | 김경희 | 정영수 | 김정화 | 3013 |

| 기관명 |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|-------|-----|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|--|--|--|--|---|----|----|-----|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|-------|---|---|
| 출연대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 장 : 연명모 ○ 기관개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재지 : 청주 흥덕구 공단로 87(복대동,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) - 규모 : 1개소(전용면적 379.8㎡) - 기관성격 : 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법인 - 주된사업 : 민간 제공기관 지원, 사회서비스 관련 연구·조사,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수탁·운영 등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출연사업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출연 예정금액 : 1,936백만원 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(단위:백만원)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 분</th> <th rowspan="2">2023년 예산액 (출연액)</th> <th rowspan="2">2024년 요구액</th> <th colspan="5">재원별</th> </tr> <tr> <th>계</th> <th>국비</th> <th>도비</th> <th>시군비</th> <th>기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사회서비스원 운영비</td> <td>1,936</td> <td>1,936</td> <td>1,936</td> <td>-</td> <td>1,936</td> <td>-</td> <td>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| | | | | | 구 분 | 2023년 예산액 (출연액) | 2024년 요구액 | 재원별 | | | | | 계 | 국비 | 도비 | 시군비 | 기타 |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| 1,936 | 1,936 | 1,936 | - | 1,936 | - | - |
| 구 분 | 2023년 예산액 (출연액) | 2024년 요구액 | 재원별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계 | 국비 | 도비 | 시군비 | 기타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| 1,936 | 1,936 | 1,936 | - | 1,936 | - | -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출연필요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용자의 욕구 다양화 및 돌봄 필요대상 확대에 따라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,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 등 공공부문 역할 확대 ○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따라 소요되는 인건비 및 운영·사업비 지원 필요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근거법령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7조(시·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) ① 시·도지사는 제10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 시·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 - 제29조(보조금 등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·도 서비스원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지도감독부서의견(중평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회서비스 공공성 향상, 시군 사회서비스 격차 완화 및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 등을 위해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○ 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 지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첨부자료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. 출연기관 현황 3. 출연사업계획서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1-① 관리 · 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

- (경영평가) : 해당없음
- (재정사업평가 및 감사결과) : 해당없음

2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

-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은 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(이하 “법”이라고 한다.)」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,
 - '23.6.1일 개원하여 시설 컨설팅,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·심리지원, 토론회와 지역사회보장계획, 지역주민 욕구조사 및 종사자 보수 실태 조사, 돌봄모델 연구를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서비스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 중임
- 그간 사회서비스원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운영·사업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보조해 주었으나, '24년 국비가 전액 삭감되어 도비로 출연 예정이며,
- 공공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도민에게 공평하고 양질의 서비스 수혜를 위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지속성 있는 기관 운영 필요
- 이에,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의 기관 운영 초기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운영 예산의 '원안의결'을 건의드립니다

3 출연금 검토

(단위:백만원)

| 내역 | 2023년 예산액(최종)(C) | 2024년 예산안 |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
| | | 기관 요구액(A) | 실과 검토액(B) | 증감(B-A) | 전년대비 증감액(B-C) |
|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| 1,936 | 1,936 | 1,936 | - | - |

4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

| 사업목적 명확성 | 출연의 타당성 | 유사 중복성 | 사업방식 효율성 | 사업의 시급성 | 투자대비 효과성 | 재원분담 적절성 |
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여 | 여 | 부 | 여 | 여 | 여 | 여 |

1-② 출자·출연 기관현황

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

| | | | | |
|---|--|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설립근거 |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| | | 전화번호 : 043-820-3601 |
| | | | | 홈페이지 : cb.pass.or.kr |
| 주요연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설립등기('22. 11. 24.) 개원('23. 06. 01.) | | 기관형태 | 출연기관 |
| 직원현황 ('23.8월 현원기준) | 계 | | 정규직 | 비정규직 |
| | 13명 | | 13명 * 별도 공무원 파견 2명 | - |
| 임원 | 직책(직책명) | 성명 | 소속(직위) | 임기 |
| | 상임이사 | 연명모 |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장 | '22.11.24.~'25.11.23.(3년) |
| | 비상임이사 | 김현진 |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| '22.11.24.~'24.11.23.(2년) |
| | " | 김혜정 | 복지실천여성협의회 이사 | '22.11.24.~'24.11.23.(2년) |
| | " | 변창수 |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장 | '22.11.24.~'24.11.23.(2년) |
| | " | 유응모 | 오송종합사회복지관장 | '22.11.24.~'24.11.23.(2년) |
| | " | 윤경미 | 서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| '22.11.24.~'24.11.23.(2년) |
| | " | 이규하 | 차미원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| '22.11.24.~'24.11.23.(2년) |
| | " | 임진숙 | 한국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연합회장 | '22.11.24.~'24.11.23.(2년) |
| | " | 최현숙 | 충청북도학원장학회 이사장 | '22.11.24.~'24.11.23.(2년) |
| | " | 한규량 | 한국교통대학교 경영복지학부 교수 | '22.11.24.~'24.11.23.(2년) |
| | " | 이제승 (당연직) | 보건복지국장 | 재임기간 |
| | 감사 | 노동영 | 변호사 | '22.11.24.~'24.11.23.(2년). |
| | " | 김경희 (당연직) | 복지정책과장 | 재임기간 |
| | 주요기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역량있는 공급주체 진입·성장을 위한 민간 제공기관 지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관련사업 수탁·운영 충북형 운영모델 제시를 위한 사회서비스 연구 등 | | |
| 출연금 | | | 100백만원 | |
| 그 간 예산지원 현 황 ※운영비(국비 50%, 도비 50%) ※설치비(국비 100%) | 2022년 | 운영비 | 156백만원 | |
| | | 설치비 | 500백만원 | |
| | 2023년 | 운영비 | 1,936백만원 | |

1-③ 출자·출연 사업계획서

| 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|----|----|----------|
| 사업명 |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| 구분 | 출자 | |
| 주관부서 | 복지정책과 | | 출연 | 1,936백만원 |

□ 목적 및 필요성

- 이용자의 욕구 다양화 및 돌봄 필요대상 확대에 따라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등 공공부문 역할 확대 필요
-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및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민관 사회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道단위 컨트롤타워 구축·운영

□ 출연개요

- 사업명 :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
- 사업기간 : 2024. 1 ~ 12월
- 출연액 : 1,936백만원
- 주요사업
 - 역량있는 공급주체 진입·성장을 위한 민간 제공기관 지원
 -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관련사업 수탁·운영
 - 중복형 운영모델 제시를 위한 사회서비스 연구 등
- 출연근거 : 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9조

□ 산출기초

(단위:백만원)

| 구분 | 금액 | 산출내역 | 재원 |
|---------------|-------|---|---------|
| 합계 | 1,936 | | |
| 사회서비스원 인건비 | 1,016 | 5,643천원×15명×12월≒1,016백만원 ※ 인건비, 4대보험, 퇴직금, 계수당 등 | 도비 100% |
| 사회서비스원 운영·사업비 | 920 | | 도비 100% |

□ 기대효과

- 다양한 민간지원 기능을 통해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
- 사회서비스의 공적기능 강화 등 사회서비스 제공의 구심적 역할 수행

□ 출자·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사회서비스의 공적기능 제한 및 구심적 역할 부재 우려
-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따른 기관 운영 차질

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7조(시·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) ① 시·도지사는 제10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에 시·도 사회서비스원(이하 "시·도 서비스원"이라 한다)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시·도지사가 설립한 시·도 서비스원은 법인으로 한다.
- ③ 시·도 서비스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- ④ 시·도 서비스원의 설립 및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(시·도 서비스원의 사업) ① 시·도 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- 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·노인·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
 - 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
 - 3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
 - 4.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
 - 5.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관에 대한 재무·회계·법무·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·자문
 - 6.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
 - 7.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·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
 - 8.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
 - 9.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
 - 10. 그 밖에 시·도지사가 사회서비스 공공성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그 밖에 시·도 서비스원의 사업 내용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9조(보조금 등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·도 서비스원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제30조(재원) 시·도 서비스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·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.

2 출연 심의요구서

| | | | | | |
|------|-------|-------|-----|-------|------|
| 주관부서 | 보건정책과 | 소속부서장 | 팀 장 | 담당주무관 | 전화 |
| | 공공의료팀 | 임헌표 | 하미경 | 지동식 | 3152 |

| | | | | | | |
|---|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--|--------|
| 기관명 |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| | | | | |
| 출자·출연대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사장 : 김영환 ○ 일반현황 : (소재지)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-1 (주요사업) 장학사업, 인재양성사업 | | | | | |
| 출자·출연사업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출연 예정금액 : 172백만원 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(단위: 백만원) | | | | | |
| | 구분 | 2023년 사업비 | 2024년 사업비* | 재원별 | | |
| | 계 | 320 | 344 | 계 | 도비출연금 | 인재양성재단 |
| | | | | 172 | 34.4 | 137.6 |
| ※ 재정부담 비율 : 도 50%,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10%, 의료원 등 40% | | | | | | |
| 출자·출연필요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로 공공병원으로서의 공익적 기능강화 및 포괄적 공공의료서비스 안정적 제공 | | | | | |
| 근거법령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8조 ※ 제8조(출연) 도지사·시장·군수는 진흥원의 재산 및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. | | | | | |
| 지도감독부서인권(중평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충북의 우수인재를 발굴·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각종 장학사업과 함께 대학 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음. ○ 청주·충주의료원에서는 부족한 간호사 충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,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수급 방안이 필요함. ○ 단양군보건의료원 개원이 예정('24.5월)됨에 따라 사업대상기관 추가 및 출연금이 소폭증가 되었으며, 단양군보건의료원의 원활한 진료 기능 확보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동사업 추진이 필요해 보임 ○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장학사업과 연계하여 생활장학금 지원에 소요되는 출연금 지원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 | | | | | |
| 첨부자료 | 1.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. 출연기관 현황(기관연혁, 인원 및 조직현황 등) 3. 출연사업계획서 | | | | | |

2-① 관리·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

- (경영평가) 경영층 리더십 및 전문성, 경영혁신활동, 국·도정우수시책 추진실적 우수
- 공공의료분야 간호인력 장학생선발 신설 등 도정과제와의 연계성을 높여 사업추진함
- (재정사업평가 및 감사결과) 특이사항 없음

2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

-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은 「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」 제4조 및 제8조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, 우수 인재 발굴 및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 필요
- 청주·충주의료원에서 부족한 간호사 충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, 지방의료원 간호사 수급은 여전히 원활하지 않은 실정으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해 보임
- 단양군보건의료원이 사업대상기관에 추가되어 예산이 소폭 증액되었고, 해당기관은 '24. 5월 개원 예정으로 원활한 진료기능 확보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동 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간호인력을 공급받을 필요있음
- 이에 지방의료원 등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생활장학금 지원을 통한 의무복무(2년)로 간호사 수급 안정화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기 위해 원안의결을 건의드립니다

3 출연금 검토

(단위:백만원)

| 내역 | 2023년 예산액(최종) (C) | 2024년 예산안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기관 요구액(A) | 실과 검토액(B) | 증감 (B-A) | 전년대비 증감액 (B-C) |
|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 지원 | 160 | 172 | 172 | - | 12 |

4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

| 사업목적 명확성 | 출연의 타당성 | 유사 중복성 | 사업방식 효율성 | 사업의 시급성 | 투자대비 효과성 | 재원분담 적절성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여 | 여 | 부 | 여 | 여 | 여 | 여 |

2-2 출자출연 기관현황

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

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설립근거 |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| | | | 전화번호 : 043-224-0221 홈페이지 : www.chrdf.or.kr | | | |
| 주요연혁 | - '08. 2월 설립등기 - '17. 8월 국민교육발전 유공 교육부장관 표창 - '22. 7월 제5대 김영환 이사장 취임 | | | 기관형태 | 출연기관 | | | |
| 인원현황 ('23.8월 현원기준) | 계 | | 정규직 | | 비정규직 | | | |
| | 21명 | | 20명 | | 1명 | | | |
| 인 원 | 직책(직책명) | 성명 | 소속(직위) | | 임기 | | | |
| | 이사장 | 김○○ | 충청북도지사 | | 재임기간 | | | |
| | 이 사 | 윤○○ | 충청북도교육감 | | " | | | |
| | " | 이○○ | 청 주 시 장 | | " | | | |
| | " | 조○○ | 충 주 시 장 | | " | | | |
| | " | 김○○ | 제 천 시 장 | | " | | | |
| | " | 최○○ | 보 은 군 수 | | " | | | |
| | " | 황○○ | 옥 천 군 수 | | " | | | |
| | " | 정○○ | 영 동 군 수 | | " | | | |
| | " | 이○○ | 증 평 군 수 | | " | | | |
| | " | 송○○ | 진 천 군 수 | | " | | | |
| | " | 송○○ | 괴 산 군 수 | | " | | | |
| | " | 조○○ | 음 성 군 수 | | " | | | |
| | " | 김○○ | 단 양 군 수 | | " | | | |
| | " | 김○○ | 충청북도 과학인재국장 | | " | | | |
| | " | 신○○ | 충청북도 행정국장 | | " | | | |
| | " | 김○○ |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| | " | | | |
| | " | 윤○○ |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 | | " | | | |
| | " | 이○○ | 충북대학교 교수 | | 22.04.03. ~ 24.04.02. | | | |
| | " | 오○○ | 대신정기화물 회장 | | 22.04.19. ~ 24.04.18. | | | |
| | " | 이○○ |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| | 22.04.19. ~ 24.04.18. | | | |
| | " | 임○○ | 前 충북여약사회 회장 | | 22.05.14. ~ 24.05.13. | | | |
| | " | 권○○ | 신한은행충북본부장 | | 22.06.22. ~ 24.06.21. | | | |
| " | 김○○ | 한국교원대 교수 | | 23.06.29. ~ 25.06.28. | | | | |
| " | 이○○ | 前 대성중학교 교장 | | 23.06.29. ~ 25.06.28. | | | | |
| " | 류○○ |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| | 23.06.29. ~ 25.06.28. | | | | |
| " | 이○○ | 농협중앙회충북지역본부장 | | 22.06.22. ~ 24.06.21. | | | | |
| " | 정○○ | 고려대학교 세종교양교육원 원장 | | 22.06.22. ~ 24.06.21. | | | | |
| " | 감사 | 송○○ | 충청북도 라이즈추진과 과장 | | 재임기간 | | | |
| " | " | 임○○ | 한빛회계법인사무소공인회계사 | | 23.06.29. ~ 25.06.28. | | | |
| 주요기능 | - 우수인재 양성 및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| | | | | | | |
| 자본금 (단위:백만원) | | 80,000 | | | 지방공기업발전기금 (단위:백만원) | | | |
| 최근3년 간 예산 현황(단위: 백만원) | 연도 | 2021 | 2022 | 2023 | 재무현황 (백만원) '22.12.31기준 | 자산 | 78,641 | |
| | | 예산액 | 6,461 | 6,308 | | 9,255 | 부채 | 142 |
| | | 일반회계 지자체 지원액 | 686 | 710 | | 2,798 | 자본 | 78,499 |
| 2022년 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 | 총수익 | | | 총비용 | | 당기순이익 | | |
| | 3,288 | | | 2,178 | | 1,110 | | |

2-③ 출자·출연 사업계획서

| 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|----|------------|
| 사업명 |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 지원 | 구분 | 출자 | |
| 주관부서 | 보건정책과 | | 출연 | 172백만원(도비) |

□ 목적 및 필요성

- 지방의료원의 간호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간호대 재학생 인재 양성
- 장학금 지원을 통한 간호인력 수급안정화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

□ 출연개요

- 사업명 :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 지원
- 사업기간 : 2024. 1 ~ 12월
- 총사업비 : 344백만원(출연금 172백만원)
- 주요내용 :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
 - 지원대상 : 간호학과 4학년 생활장학금 지원(1인 800만원/년, 43명)
- 출연근거 : 「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」 제8조

□ 산출기초

(단위:백만원)

| 구분 | 금액 | 산출내역 | 분담비율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운영재원 합계 | 344 | 8,000천원×43명 = 344백만원 | 100% |
| 도 출연금 | 172 | 8,000천원×43명×50% = 172백만원 | 50% |
|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| 34.4 | 8,000천원×43명×10% = 34.4백만원 | 10% |
| 청주·충주의료원, 단양군보건의료원 | 137.6 | 8,000천원×43명×40% = 137.6백만원 | 40% |

□ 기대효과

- 공공간호사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인력자원 타지역 유출방지
- 지방의료원 간호사 수급 안정화를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

□ 출자·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우수한 간호인력 타지역 유출 및 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간호인력 채용난 지속
-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축소, 공공보건협력체계 구축사업 추진 어려움 등 각종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이 원활하지 않을것임

지방재정법 및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

□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

제4조(사업)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

- 1. 충북인재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
- 2. 충북도민 및 도민자녀 장학사업
- 9.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임·위탁하는 사업
- 10. 그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

제8조(출연) 도지사 및 시장·군수는 진흥원의 재산 및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.